

완료 (종료)	완료 지속추진	추진 중 (전체 사업진도 %)	목표연도 및 월	비고
-	-	42%	2021. 06.	약속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~ 2022년
- 사업대상 : 42,962명(발달장애인 3,996, 지체장애인 등 38,966)
- 사업내용 :
 - 발달장애인 생애주기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시행
 -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 -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수원시장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보강
 -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의료, 교육, 문화 등 생애단계별 서비스 연계 추진

2.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 원)

구분	소요예산	기투자	2018.7.~12.		2019년		2020년		2021년	2022.6월까지	2022.7월 이후
			확보	집행	확보	집행	확보	집행	계획	계획	계획
계	87	87	67	67	20	20					
국비											
도비											
시비	87	87	67	67	20	20	-	-	-	-	-
민간자본											

【변경 요구사유】
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권한은 광역지자체 소관사항으로 설치 불가하여 기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(인력충원)으로 추진 사업을 변경하였지만,
 - 시 재정악화에 따른 '21년 예산편성 어려운 실정이며, 현행 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발달장애인 사업 법적근거 없음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 하고 시 재정사항을 검토하여 '22년 이후 기능보강 추진
- ※ 수원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('20.8월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 업무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업무 수행중이지만, 사업의 근거 조례가 없음

3. 연도별 성과지표

구분	성과지표	단위	연도별 성과지표				
			2018	2019	2020	2021	2022
변경	·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돌봄체계 구축	%	20%	40%	60%	80%	100%
	누적이행(진도)율	100%	20%	40%	40%	42%	-

【변경 요구사유】 해당없음

4. 성과지표별 추진현황(2020. 12. 31. 기준)

성과지표	추진현황
·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돌봄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달장애인 조기개입 간담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 시 : '20.11.09 10:00 · 장 소 :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· 참석대상 : 변호사, 상담사, 센터장 및 담당 공무원 · 주요내용 : 발달장애인 조기개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

○ 2020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의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

개선 및 제안사항	추진실적(추진계획 포함)
·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 운영 및 운영방향 검토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 운영방향 설정 주체는 중앙부처이며, 그 중에 지방정부는 신청, 지원대상자 발굴,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관리감독으로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, 업무 범위 내 개선 사항은 수렴 가능하지만, 전반적 운영방향 검토는 약속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. · 보건복지부에서 '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은 다른 전달체계(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)과 맞물리면서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고, 커뮤니티케어(돌봄체계) 구축은 단기간 추진이 불가한 사항 임 ·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체계 마련은 지자체 의지도 필요하지만 병원의 추진 의지가 더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, 민간기관(단체)에서 관내 병원과 자율적 협약을 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예정
·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수원형 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 개발 필요	
· 발달장애인 전생애주기에 필요한 의료지원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	

5. 추진성과

○ 발달장애인 조기개입 간담회

- 일 시 : '20.11.09 10:00
- 장 소 :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
- 참석대상 : 변호사, 상담사, 센터장 및 담당 공무원
- 주요내용 : 발달장애인 조기개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

6. 자체 점검결과

【문제점】

- 발달장애지원법 제33조 ②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는 시·도지사로 기초지자체는 설치 주체 당사자가 되기에 어려운 실정.
-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가족지원에 관한사업만 규정되어 있지만, 실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근거 부재

【대 책】

- '21년 1월부터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현행화 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'22년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 추진

7. 향후 추진계획

-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타 지자체 사례 조사 : '20.12월 한
-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: 2021. 1월
- 조례 개정(안)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: 2021. 3월 한
-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부서 협의 : 2021. 4월
-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: 2021. 5월
-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규칙심의회 : 2021. 5월
-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수원시의회 상정 : 2021. 6월(예정)
- 조례 공포 : 2021. 6월

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			
담당부서	직(직급)	성 명	전화번호
장애인복지과	장애인복지과장	박명래	2210
	장애인정책팀장	박미숙	3335
	주무관	김충영	2214
협조부서	직(직급)	성 명	전화번호
예산재정과	예산재정과장	이성률	2065
	경영평가팀장	김주찬	3894